

의안번호	2121390
의 퇴 인	박수영의원
회 답 일	2022. 5.3 .
추 계 번호	23D1666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21390) 비용추계서 요약

I. 재정수반요인

- 보험사기 정부합동대책기구 설치(안 제3조의2 신설)
- 국무총리는 보험사기행위에 대한 수사, 보험사기행위 관련 정보의 통합 관리 등을 수행하기 위한 보험사기 정부합동대책기구를 설치·운영함

II. 비용추계 결과

- 추가재정소요 : 향후 5년 간 총 40억 6,000만원, 연평균 8억 1,200만원

[표]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5~2029년

(단위: 백만원)

	2025	2026	2027	2028	2029	합계	연평균
보험사기 정부합동대책기구 설치 (안 제3조의2 신설)	777	795	812	829	847	4,060	812

차 례

I. 비용추계 결과	1
II. 재정수반요인	1
III. 비용추계의 전제	1
IV. 비용추계 상세 내역	2
1. 추계의 대상 및 방법	2
2. 보험사기 정부합동대책기구 설치·운영(안 제3조의2 신설)	3
3. 추계 결과	4

일러두기

- 추계금액은 경상가격 기준
 - 추계기간 이후에도 재정소요는 발생할 수 있음
 - 각 표의 합계는 단수조정으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

I. 비용추계 결과

- 개정안에 따라 국무총리가 보험사기 정부합동대책기구를 설치·운영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5년 7억 7,700만원, 2029년 8억 4,700만원 등 향후 5년간 총 40억 6,000만원(연평균 8억 1,200만원)이 발생할 것으로 추계됨

[표 1]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5~2029년

(단위: 백만원)

	2025	2026	2027	2028	2029	합계	연평균
보험사기 정부합동대책기구 설치 (안 제3조의2 신설)	777	795	812	829	847	4,060	812

II. 재정수반요인

- 보험사기 정부합동대책기구 설치(안 제3조의2 신설)
- 국무총리는 보험사기행위의 예방 및 대응과 관련하여 경찰청, 금융감독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과 합동으로 보험사기행위에 대한 수사, 보험사기행위 관련 정보의 통합관리 등을 수행하기 위한 보험사기 정부합동대책기구를 설치·운영함

III. 비용추계의 전제

- 안 제3조의2에 따른 보험사기 정부합동대책기구의 규모, 인적 구성, 업무 범위 등에 대하여 현 단계에서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워, 본 추계에서는 국무조정실의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이하 “부패예방추진단”

이라 함) 운영¹⁾을 유사 사례로 참조하여 추계함

- 개정안에 따른 보험사기 정부합동대책기구에서는 경찰청, 금융감독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과 합동으로 보험사기 행위 관련 정보의 통합관리 등을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본 추계에서는 보험사기행위 관련 정보의 통합관리 등을 위한 시스템 구축비 등은 정보화전략기획(ISP) 등이 구체화 되어 있지 않아 추계가 어려워 제외함
- 소비자물가상승률 및 명목임금상승률은 국회예산정책처 전망치 적용²⁾
- 안 부칙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법안 심의의결 기간 및 예산 확보 등을 고려하여, 추계기간은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년으로 함

IV. 비용추계 상세 내역

1. 추계의 대상 및 방법

- 개정안에 따른 재정수반요인은 보험사기 정부합동대책기구 설치·운영에 따른 소요비용임
 - 국무조정실의 ‘부패예방추진단 운영’ 사업 예산을 유사 사례로 참조하여 인건비, 사업비, 운영비, 임차비로 구분하여 추계함

1) 부패예방추진단은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근거하며, 단장(국무조정실 차장), 부단장, 추진단의 단원은 국무조정실 및 관계 행정기관 공무원, 관계기관 등의 파견 임직원(현재 3개팀)으로 구성됨

2) 국회예산정책처 전망 소비자물가상승률 및 명목임금상승률 (2022.10. 기준)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소비자물가상승률(CPI)	2.7%	2.4%	2.1%	2.0 %	2.0 %	2.0%
명목임금상승률	3.9%	3.6%	3.3%	3.3%	3.2%	3.1%

<비용추계 산식>

추가재정소요 = 보험사기 정부합동대책기구 설치·운영 = 인건비¹⁾ + 사업비²⁾ + 운영비³⁾ + 임차비⁴⁾

국무조정실의 유사사례인 ‘부패예방추진단 운영’사업 참조

- 1) 인건비 = 연 7,560만원 기준으로 국회예산정책처의 임금상승률 적용
- 2) 사업비 = 연 4,200만원 기준으로 국회예산정책처의 물가상승률 적용
- 2) 운영비 = 연 4.3억원 기준으로 국회예산정책처의 물가상승률 적용
- 2) 임차비 = 연 1억 8,000만원 기준으로 국회예산정책처의 물가상승률 적용

2. 보험사기 정부합동대책기구 설치·운영(안 제3조의2 신설)

□ 개정안에 따라 보험사기 정부합동대책기구를 설치·운영하는 경우 인건비, 사업비, 운영비 등 추가재정소요는 향후 5년간 41억원으로 추산됨

○ 개정안에 따른 보험사기 정부합동대책기구의 규모, 인적 구성, 업무 범위 등 구체적인 사항을 알 수 없어, 본 추계에서는 국무조정실의 ‘부패예방추진단 운영’ 사업 예산을 유사 사례로 참조하여 추계함

- ‘부패예방추진단 운영’ 사업은 여러 부처·기관의 전문인력으로 구성된 부처 합동 점검체계를 통해, 부패부조리의 단발적인 적발·처벌·시정조치에 그치지 않고 실태 및 원인을 분석하여 부패 유발 요인을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정책적 관점의 제도개선에 중점을 두어 운영
- ‘부패예방추진단 운영’ 사업은 2014년부터 2024년까지 한시적 사업으로 2023년 예산은 7억 4,000만원임

○ (인건비) ‘부패예방추진단 운영’의 인건비인 행정실무원 2명의 상용임금 연간 7,560만원(1인당 월 315만원, 2023년 예산 기준)을 적용

- 위의 기준에 따라 산출한 연간급여액에 국회예산정책처의 명목임금상승률을 곱하고, 국회예산정책처의 공공기관 법정부담금³⁾을 합하여 인건비를 산출함
- $7,560\text{만원} \times (1+3.9\%) \times (1+3.6\%) \times (1+11.35\%) = 9,053\text{만원}$ (2025년 추정)

○ (사업비) ‘부패예방추진단 운영’의 사업비는 4,200만원으로 여기에 국회예

3) 공공기관 기준 법정부담금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으로 구성되며, 연도별 기관부담률은 2024년 11.26%, 2025년 11.35%, 2026년 11.43%, 2027년 11.52%, 2028년 11.61%, 2029년 11.69%

산정책처의 소비자 물가상승률을 곱하여 산출

- (운영비) ‘부패예방추진단 운영’의 운영비는 4.3억원으로 여기에 국회예산정책처의 소비자 물가상승률을 곱하여 산출
- (임차비) ‘부패예방추진단 운영’의 임차비는 연간 1억 8,000만원(월 1,500만원×12개월)으로 여기에 국회예산정책처의 소비자 물가상승률을 곱하여 산출

[표 2] 보험사기 정부합동대책기구 설치·운영 시 추가재정소요: 2025~2029년
(단위: 백만원)

	2025	2026	2027	2028	2029	합계
인건비	91	94	97	100	103	484
사업비	44	45	46	47	48	230
운영비	453	463	472	481	491	2,360
임차비	189	193	197	201	205	986
합계	777	795	812	829	847	4,060

3. 추계 결과

- 개정안에 따라 보험사기 정부합동대책기구를 설치·운영하는 경우 추가 재정소요는 2025년 7억 7,700만원, 2029년 8억 4,700만원 등 향후 5년간 총 40억 6,000만원(연평균 8억 1,200만원)이 발생할 것으로 추계됨

[표 3] 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5~2029년
(단위: 백만원)

	2025	2026	2027	2028	2029	합계	연평균
보험사기 정부합동대책기구 설치 (안 제3조의2 신설)	777	795	812	829	847	4,060	812

국회예산정책처	행정비용추계과
과장	오명희
추계세제분석관	여은구
연락처	02-6788-4673
	cecil@nabo.go.kr
